

국 민 안 전 처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납 및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관 련 자 합천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보 ○○○는 2014. 7. 25.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합천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합천·의령·창녕군에서는 [표 1]과 같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시·군	사업지구명	도금액 (백만원)	계약체결일	도금업체	비고
합천군	○○지구	907	2012.12.11.	(주)○○○○ ○○○	
합천군	○○지구	2,196	2012.12.11.	(주)○○○○ ○○○	
합천군	○○○○지구	2,024	2012.02.07.	○○○○○○(주) ○○○	
합천군	○○ 급경사지	1,341	2013.12.26.	(주)○○○○ ○○○	
합천군	○○ 급경사지	1,893	2014.12.26.	○○○○(주) ○○○	
의령군	○○ 급경사지	5,760	2012.3.30.	○○○○	
의령군	○○ 급경사지	136	2013.3.14.	○○○○○○○	
의령군	○○○ 급경사지	3,759	2014.5.29.	○○○○○○○	
창녕군	○○ 지구	615	2013.6.26.	(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천군 및 3개 군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한 후 아래 [표 2]와 같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국고보조금 미반납 현황

시·군	사업명(정비사업)	잔액 (백만원)	집행금액 (백만원)	집행내용	비고
계		1,820	1,130		
합천군	○○	212	212	평산 재해위험지구 보상비 등	
합천군	○○	588	588	평산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합천군	○○○○	330	330	관기 우수배수 불량지구 개선사업 등	
합천군	○○ 급경사지	74	-	미집행(불용)	
합천군	○○ 급경사지	28	-	미집행(불용)	
의령군	○○ 급경사지	101	-	미집행(불용)	
의령군	○○ 급경사지	273	-	미집행(불용)	
의령군	○○○ 급경사지	196	-	미집행(불용)	
창녕	○○지구	18	-	미집행(불용)	

조치할 사항 합천군수, 의령군수, 창녕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을 국민안전처 승인없이 사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불용처리된 집행잔액(합천 : 102백만원, 의령 : 570백만원, 창녕 : 18백만원)에 대하여 정산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